|  |  |  |
| --- | --- | --- |
| **2019년도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 급여기준 및 납부액 통합에 관한 통지**  경사보발[2019]7호  각 구(區) 사회보험사업(기금)관리센터, 시(市) 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각 구(區) 의료보험처리기구, 각 사회보험대리기구, 각 사회보험 가입업체, 각 사회보험 가입자 :  <국무원 판공청의 사회보험료 요율 인하 종합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판발[2019]13호)의 요구에 따라 북경시 도농 비(非)민간업체 취업자 평균급여 및 도농 민간업체 취업자 평균급여를 가중 계산하여 산출된 2018년도 북경시 도농 업체 취업자 평균급여는 94,258위안이며 이 액수에 의거하여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공기관•사업기관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기수를 책정한다. 북경시의료보장국이 공포한 2019년도 종업원의료보험료 및 출산보험료 납부기수의 상하한 기준과 북경시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 급여기준 및 납부액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종업원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2.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를 납부기수로 하는 경우 7,855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3. 직전연도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를 300% 상회하는 경우 23,565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4.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의 60%를 납부기수로 하는 경우 4,713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5. 북경시의 직전연도 도농업체취업자 월평균 급여의 46%를 납부기수로 하는 경우 3,613위안을 급여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6. 개인 명의로 신상기록(档案) 보관을 위탁하는 자유직업인의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 : 7. 시(市)•구(區) 인력자원공공서비스센터 등 사회보험대리기구에 개인 명의로 신상기록(档案) 보관을 위탁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와 가도(街道) 및 향(鄕)•진(鎭)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사회보험료 요율 인하에 관한 통지>(경인사양발[2019]67호)의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기업종업원양로보험료 상한과 하한 사이의 구간에서 적당한 액수를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기수로 선택할 수 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직전연도 납부기수에 의거하여 2019년도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를 확정하되 그 액수가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납부기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하한을 납부기수로 한다. 8. 종업원기본양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기수의 하한은 3,613위안이며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월 납부액은 722.6위안,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은 43.36위안이다. 9. 종업원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납부기수의 상한은 23,565위안이며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월 납부액은 4,713위안,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은 282.78위안이다. 10. 사회보험 보조 혜택을 투리는 자는 하한에 따라 216.78위안을 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하고 7.23위안을 실업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한다. 11.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12.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 출산보험료 월 납부기수의 상한은 27,786위안이며 하한은 5,557위안이다. 13. 개인 명의로 신상기록(档案) 보관을 위탁하는 자유직업인의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 월 납부액은 453.82위안이다. 14. 의료보험 보조 혜택을 누리는 자의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 월 납부액은 64.84위안이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북경시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북경시의료보험사업관리센터  2019년 7월 1일 |  | **关于统一2019年度各项社会保险缴费**  **工资基数和缴费金额的通知**  京社保发〔2019〕7号  各区社会保险事业(基金)管理中心、市经济技术开发区社会保险基金管理中心，各区医疗保险经办机构、各社会保险代办机构，各参保单位，各参保个人：  　　按照《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的通知》(国办发〔2019〕13号)要求，以本市城镇非私营单位就业人员平均工资和城镇私营单位就业人员平均工资加权计算，2018年本市全口径城镇单位就业人员平均工资为94258元，用于作为核定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机关事业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和工伤保险缴费基数的依据。按照北京市医保局公布的2019年度职工医疗保险和生育保险的缴费基数上下限标准，以及北京市社会保险的相关规定，现就统一2019年度各项社会保险缴费工资基数和缴费金额的有关问题通知如下：  　　一、职工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工伤保险  　　(一)以本市上一年全口径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作为缴费基数的，其缴费工资基数为7855元。  　　(二)上一年职工月平均工资收入超过本市上一年全口径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300%的，其缴费工资基数为23565元。  　　(三)以本市上一年全口径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的60%作为缴费基数的，其缴费工资基数为4713元。  　　(四)以本市上一年全口径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的46%作为缴费基数的，其缴费工资基数为3613元。  　　(五)个人委托存档的灵活就业人员缴纳职工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月缴费金额：  　　1.职工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根据《关于降低本市社会保险费率的通知》(京人社养发〔2019〕67号)规定，自2019年7月起，在市、区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等社会保险代理机构以个人身份存档，且参加社会保险的个人，以及在各街道(乡镇)社会保障事务所缴纳社会保险的个人，缴费基数可以在企业职工养老保险缴费下限和上限之间适当选择。未按期办理申报手续的，其2019年度社会保险缴费基数将依据本人上一年度的缴费基数确定，低于职工养老保险缴费下限的，以下限作为缴费基数。  　　2.职工基本养老保险缴费、失业保险基数下限为3613元，月缴纳职工基本养老保险费722.6元，月缴纳失业保险费43.36元。  　　3.职工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缴费基数上限为23565元，月缴纳职工基本养老保险费4713元，月缴纳失业保险费282.78元。  　　4.享受社会保险补贴人员，按照下限月缴纳职工基本养老保险费216.78元、失业保险费7.23元。  　　二、职工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  　　(一)职工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月缴费基数上限为27786元，下限为5557元。  　　(二)个人委托存档的灵活就业人员月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费453.82元。  　　(三)享受医疗保险补贴人员月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费64.84元。  　　特此通知。  北京市社会保险基金管理中心  北京市医疗保险事务管理中心  2019年7月1日 |